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The NGO Movement and the Principle of Market

박 동 운*

Park, Dong-Un

目 次

I. 서론	1. 시장경제원리
II. 한국의 기업환경	2.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III.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IV. 결론

I. 서론

1992년 노키아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조르마 오릴라 박사는 핀란드가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던 불황기에 멋있는 이동단말기를 개발하여 전 세계로 수출했다. 이 결과 그는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여 핀란드를 불황으로부터 구해냈다. 한 기업인의 경영전략이 노키아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시켰고 금융위기에서 허덕이던 핀란드를 디지털경제와 지식정보사회의 표본으로 만들었으며 핀란드를 '노키아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했다.

핀란드는 지금 노키아그룹 덕분에 인구 75.1%의 이동전화기 사용으로 세계 1위 정보통신국가가 되어 있다. 그 뿐인가. 핀란드는 스위스 IMD가 2002년 4월에 발표한 2002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4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고, 프레이저연구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02년 세계경제자유 순위에서 2000년 123개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노키아의 위상이 이렇게 부상하게 된 이유는 노키아가 70년대 전기식 전화교환기를 교체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전자식 교환기를 개발한 데다가 핀란드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상경학부 교수.

정부가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을 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호 (2002)).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는 세계 일류 기업 하나면 나라 전체가 일류'이라는 점을 입증해주었다는 점에서 규제로 가득차 있는 한국의 기업환경에 값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프레이저연구소가 발표한 기업활동과 관련된 2000년 한국의 경제자유 순위를 보면 한국은 참으로 기업하기가 어려운 나라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경제자유에서 2000년 종합 평점 7.0으로 123개국 가운데서 38위를 차지했지만 기업규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평점 5.2로 63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보다 낮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2000년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이지만 기업규제는 중국보다 심하고 러시아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야 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쓴 것이다.

본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한국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III장에서는 시민운동의 주장이 시장원리에 어떻게 어긋나 있는가를 지적한 후 I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II. 한국의 기업환경

한국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와 스위스 IMD의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평가하기로 한다. '경제자유지수'란 한 국가의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이고(The Fraser Institute (2002)), '국가경쟁력'이란 한 국가의 경쟁력 조성능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이다(IMD (2002)). 프레이저연구소는 1996년부터 해마다 연차보고서를 통해 1970~2000년 간 최근에 들어와 123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고, IMD는 1989년부터 해마다 47~4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발표해 오고 있다.

프레이저연구소의 2002년 경제자유지수는 123개국을 대상으로 5개 분야 21개 항목에 걸쳐 측정되었다. 5개 분야 21개 항목은 부록에 첨부된 <한국의 경제자유 평점과 순위: 1970~2000년>에 나타나 있다.

<표>는 <분야 5: 신용·노동·기업 규제>의 2000년 여러 국가들의 항목별 경제자유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평점과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기업환경을 상대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시장경제국가 미국, 구조개혁에서 성공한 영국과 뉴질랜드, 구조개혁에서 실패한 멕시코와 브라질,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구 사회주의국가 중국과 러시아, 한국의 경쟁국가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한국을 <표>에 포함시켰다(박동운(2000)). <표>의 수치는 10점 만점인 항목별 경제자유 평점이고, ()안의 수치는 평가대상 123개 국가 가운데서 차지한 순위이다.

먼저 종합평점과 순위를 보자(맨 윗줄 참조).

미국, 영국, 뉴질랜드는 평점이 8.2 이상으로 123개국 가운데 2, 3, 4위를 차지하여 (1위는 홍콩) 역시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멕시코, 브라질, 중국, 러시아는 평점이 낮고 순위도 85~114위에 속해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쟁국 싱가포르는 평점이 8.6으로 2위이고 일본은 평점이 7.3으로 24위이다. 한국은 7.0으로 38위.

다음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용·노동·기업 규제> 분야를 보면, 이는 한국이 84위로 멕시코와 비슷할 정도로 경제자유가 낮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살펴본 종합평점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이제 한국의 기업환경을 보자.

한국이 <신용·노동·기업 규제>에서 평점 5.4로 84위를 차지한 것은 신용시장, 노동시장, 기업활동 면에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이다.¹⁾

<신용시장 규제>에서 한국은 평점이 6.9로 64위를 차지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는 약간 높고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고 중국, 러시아, 멕시코보다는 높다. 그러나 한국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국가에 비해서는 너무 낮다.

<노동시장 규제>에서 한국은 평점 4.2로 58위를 차지했는데 한국은 표에 포함된 어느 국가보다도 평점과 순위가 가장 낮다. 한국은 구조개혁에서 실패한 멕시코와 브라질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중국과 러시아보다도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다. 또 한국은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싱가포르가 낮은 편이지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동시장 규제가 심하다. 한국은 2000~2002년 간 IMD의 국가경쟁력 <노사관계> 항목에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49개국 가운데 44~47위로 사실상 꼴찌를 차지했는데 이 또한 경제자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1) <신용·노동·기업 규제>에서는 순위가 84위인데도 이를 세분화시킨 <신용시장>에서는 64위, <노동시장>에서는 58위, <기업활동>에서는 63위로 모두 낮게 나타나 있는 것은 각 항목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2000년 몇몇 국가들의 항목별 경제자유 평점과 순위

국가	미국	영국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종합평점(10점 만점)→	8.5	8.4	8.2	6.3	5.8	5.3	4.7	8.6	7.3	7.0
↓ 항목 (123개국 중 순위)→	(3)	(4)	(5)	(66)	(82)	(101)	(116)	(2)	(24)	(38)
〈신용·노동·기업 규제〉	8.2(2)	8.1(3)	7.9(4)	5.4(85)	6.1(99)	5.2(92)	4.4(114)	7.4(8)	6.7(28)	5.4(84)
A: 신용시장 규제	9.3(7)	9.3(5)	9.3(3)	5.5(100)	6.9(68)	5.4(102)	3.6(116)	8.2(25)	6.3(78)	6.9(64)
(i) 은행 사적소유	10.0	10.0	10.0	8.0	5.0	0.0	2.0	10.0	5.0	5.0
(ii) 외국은행과의 경쟁	7.6	7.4	7.9	5.9	7.1	2.3	4.3	4.6	4.2	3.2
(iii) 민간부문의 신용확대	9.4	9.9	9.5	4.1	7.3	9.4	5.9	8.3	8.1	9.5
(iv) 부(負)의 실질이자율 회피	10.0	10.0	10.0	4.0	8.0	10.0	2.0	10.0	8.0	10.0
(v) 이자율 규제	8.7	8.5	9.1	6.5	5.8	1.8	4.2	6.8	5.6	4.5
B: 노동시장 규제	7.2(3)	6.9(5)	5.9(21)	4.8(43)	4.6(48)	4.7(47)	4.5(52)	5.5(28)	6.5(11)	4.2(58)
(i) 최저임금의 영향	3.8	4.6	3.6	2.7	3.5	4.4	2.6	4.6	4.0	4.1
(ii)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6.7	4.9	3.1	4.1	5.3	5.1	6.1	7.2	4.2	4.7
(iii) 단체협약	8.4	8.6	8.1	5.7	5.5	7.7	8.3	8.4	7.4	6.2
(iv) 실업수당의 인센티브	7.0	6.5	4.0	6.5	6.0	6.2	5.5	7.5	6.8	6.0
(v) 징집제도	10.0	10.0	10.0	5.0	3.0	0.0	0.0	0.0	10.0	0.0
C: 기업 규제	8.3(8)	8.1(9)	8.5(3)	5.9(46)	6.7(58)	5.6(54)	5.1(67)	8.4(4)	7.2(24)	5.2(63)
(i) 가격통제	8.0	8.0	10.0	7.0	7.0	3.0	5.0	9.0	6.0	1.0
(ii) 신규기업 관련 행정적 애로	7.9	7.9	7.5	6.7	7.7	7.6	6.2	7.7	6.5	6.5
(iii) 정부관료와 보내는 시간	8.2	8.0	7.8	6.3	7.4	5.4	5.0	8.1	9.1	7.7
(iv) 신규기업 출발의 용이함	8.4	7.7	7.9	3.7	5.7	6.5	4.0	8.0	5.9	5.4
(v) 정부관료에게 상납	8.8	9.0	9.2	5.7	5.7	5.5	5.4	9.1	8.5	5.4

주: 평점은 10점 만점이고, ()안의 수치는 모두 평가대상 123개 국가 중 순위를 나타냄.
 자료: 이 표는 필자가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J. Gwartney and R.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0: Annual Report, The Fraser Institute, 2002, pp. 59-183.

마지막으로 〈기업 규제〉를 보자. 이 항목에서 한국은 평점 5.2로 63위를 차지했는데 한국은 러시아(평점 5.1에 67위)보다 약간 높을 뿐 심지어 중국, 멕시코, 브라질보다도 상당히 낮다. 이야말로 한국이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기업 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가격통제〉에서 평점이 1.0으로 한국 다음으로 낮은 3.0인 중국의 1/3, 10점 만점인 뉴질랜드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표에는 없지만 IMD의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의 〈가격통제〉 항목은 2000~2002년 간 49개국 가운데 사실상 꼴찌인 44~47위를 차지하여 한국이 기업규제가 얼마나 심한 나라인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가격통제〉와 관련된 프레이저연구소의 자료는 흥미롭다. 2000년 123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가격통제〉에서 0.0을 받은 나라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8개국이고 2.0을 받은 나라는 가봉, 이란 등 12개국이다. 한국은 언급한 대로 유일하게 1.0을 받은 나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라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123개국 가운데 9번째로 가격통제가 심한 나라인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작용의 엔진'인데 한국에서 정부에 의한 지나친 <가격통제>는 한국경제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기업규제 가운데 <신규기업 관련 행정적 애로>에서 한국은 평점 6.5로 러시아(6.2)보다 높을 뿐이고, <정부관료에게 상납>에서는 평점 5.4로 표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신규기업 출발의 용이함>에서는 평점 5.4로 멕시코, 러시아 다음으로 낮다. <정부관료와 보내는 시간>에서는 평점 7.7로 멕시코, 브라질, 중국, 러시아보다 높을 뿐이다.

이처럼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자유지수와 IMD의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상대평가를 한 결과 한국의 기업규제는 중국보다 심하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는 한국이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기업환경은 정부규제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Ⅲ.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시민운동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어 시민운동의 주장이 시장원리에 어떻게 어긋나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런데 한국의 시민운동은 비교적 다양한 주장을 내세워 왔지만 여기에서는 가격규제와 소액주주운동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1. 시장경제원리

시장경제가 무엇인가는 아담 스미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미체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소상하게 밝혀졌다. 그런데 공병호 박사는 『시장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시장경제원리를 여덟 가지로 정리하여 시장경제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공병호(1995)).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원리를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① 교환자유 원리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발적 교환은 부를 만들어내고 교환에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의 첫째는

개개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흔히 경제정의나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자발적 교환을 억제하는 입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사회 발전과 번영을 방해하곤 한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개입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내세워 국가경제 발전을 방해하곤 한다.

② 사적재산권 원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운으로 얻은 결과물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용·처분·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사적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사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적재산권 보호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 있게 행동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가진 것을 더욱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사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저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 자유기업 원리

아무리 우수한 노동력이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업가 entrepreneur라는 존재에 의해 하나로 꿰어지지 못한다면 이들 생산요소는 부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골프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박세리 같은 골퍼가 되고, 기업가 소질이 있는 사람은 빌 게이츠 같은 사업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기업 원리이다. 역사발전 과정을 보면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시장경제로 구체화되고 주식회사라는 기업조직이 만들어진 후에야 인류의 생활이 윤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기업 원리는 중요한 것이다.

④ 경쟁 원리

경쟁은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혈액과 같은 것으로 시장경제의 또 하나의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아주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경쟁은 선이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필수적인 이유는 경쟁이 신제품, 신생산방식 등을 발견해 내는 '발견적 절차discovery procedure'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원리란 모든 것을 경쟁과정에 맡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경쟁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 등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⑤ 인센티브 원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센티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 상승 및 하락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관습 등이다. 예를 들면, 한 사회의 법과 제도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쪽보다 적게 일하고 적게 저축하는 쪽에 비중을 둔다면 사람들의 행동은 이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인센티브 원리를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⑥ 자기책임 원리

시장경제원리의 하나는 개인적 책임 원리이다. 개인적 책임 원리는 철저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선택이 자신의 책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기 책임 원리는 중요하다.

⑦ 작은 정부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큰 정부와는 공존할 수 없다. 정부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늘어나고 그만큼 개인의 자유는 구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 증대는 경제와 정치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결국 경제활동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혼재되어 정부실패를 가져오고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⑧ 법치 원리

시장경제원리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뜻한다. 시장경제가 합리적인 법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시장경제는 질서를 잃게 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없다.

법의 지배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기 위해 하이에크가 내린 법의 정의를 보자. 그에 따르면, 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 첫째,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추상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둘째, 법은 어떤 목적이나 동기 또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행동만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소극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셋째,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지 다양한 범주를 기초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법은 일반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넷째, 법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영역을 설정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금지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법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시장경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경국(1999)).

이와 같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곧이어 시민운동의 주장을 평가할 것이다.

2.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는 시민운동의 주장을 가격인하와 소액주주운동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1) 가격인하운동

시민단체가 내세운 핸드폰, 항암치료제인 글리벡 등의 가격 인하는 그들의 주장이 시장 원리에 어떻게 어긋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시민단체가 특정상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는 그럴듯한 명분이 제시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작동의 엔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가격인하는 시장작동을 왜곡시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학자 밀튼 프리드먼에 따르면, 가격의 주요 역할은 정보 전달과 인센티브 제공이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이외의 다른 요인—이를테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특정상품의 가격 인하는 시장작동의 엔진을 멈추게 할 것이다.

관련된 예를 들어 보자. 1차 유가파동 직후에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는 독일과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석유를 생산하는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운전자들을 위해 석유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게 동결했기 때문이다. 붕괴 직전의 구 소련을 1990년에 방문한 필자는 모스크바의 한 미국 햄버거 상점 앞에 무려 1K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가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긴 줄'이 늘어서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긴 줄'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로 불렸다.

이처럼 가격이 수요공급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두 말할 필요없이 그것은 기업가와 소비자에게 갈 것이다. 기업가는 이윤극대화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격인하나 가격동결의 경우 가격은 이윤극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한다.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격인하나 가격동결의 경우 가격은 초과수요를 가져와 소비자가 원하는 양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처럼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면 시장은 제 기능을 잃게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나아가서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두 가지를 예로 든다. 하나는 쌀 생산과 관련된 정책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쌀이 약 1,300만 섬이나 남아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소비감소에도 있지만 과잉공급에도 있다. 쌀의 과잉공급이 나타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생산자가 소비감소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보다는 정부의 가격지지정책에 따라 원하는 대로 생산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여 최근 '쌀 생산조정제도'를 3년 간 도입하기로 하고, '가격'이 아닌 '수량'조정정책을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상폭을 매년 5~10%로 제한하고 계약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건물주들은 금리가 낮은 데다가 계약보장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료를 앞으로의 인상 분까지 한꺼번에 인상하고만 것이다. 이 결과 월 84만원이 164만원까지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가격결정에 개입하면 '시장의 보복'은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송병락(2001)).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나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결정되면 소비자는 상품이 부족하여 '봉'이 되고, 반대로 높게 결정되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또한 '봉'이 된다. 뿐만 아니라 두 경우에 모두 생산자는 말할 것 없고 국가경제도 멍들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반드시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윤극대화를 이루려는 기업가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소비자를 왕으로 모시으로써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질을 속여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폭리를 취한 경우에 소비자가 왕 노릇을 한 최근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한다. 2001년 광우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일본의 유키지루시 회사는 자신들은 일본 쇠고기만을 판매한다고 선전하다가 들통이 나자 2002년 2월 22일 드디어 문을 닫고 말았다(조선일보(2002.2.23)).

이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두어도 시장이 그 위력을 발휘하여 시장의 왜곡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2) 소액주주운동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단체가 내세워 온 소액주주운동은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1) 소액주주운동의 기여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내세우는 운동이다. 소액주주운동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된다.

한국의 기업—특히 재벌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자 등 회사의 내부자들은 (구체적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회사의 재산을 착복했거나 지나치게 싼값에 매입하여 자신의 것으로 취했을지도 모른다고 흔히 지적되어 왔다. 이는 회사의 회계나 의사결정과정 등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이 점 때문에 소액주주운동은 경영자들이 회사의 재산을 私用하거나 착복할 경우 큰코다칠 수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2)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소액주주운동

그런데 시민단체의 소액주주운동은 소액주주의 이익추구를 내세워 왔지만 사실상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구체적 수단들은 총수 퇴진, 지급보증 해소 등을 통한 독립경영체제 유지, 투명경영,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같은 것들이다. 소액주주운동이 내세우는 주장을 들춰보면, 많은 경우 그 내용은 소액주주의 이익추구와 관련되기보다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반드시 소액주주의 이익극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지 않고는 소액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액주주운동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점에 관해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추측'이라는 용어를 빌려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추측의 근거가 되는 시민단체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주주인 총수의 손에서 전문경영인의 손으로 넘기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노사공동결정제 등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정리해고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넷째, 사외이사 비율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사외이사 선임권이 지배주주의 손을 떠나길 원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스스로가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윤극대화 이외의 것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섯째, 은행의 진정한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김정호(2002))."

이제 인용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이 시장원리에 어떻게 어긋나는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주주인 총수의 손에서 전문경영인의 손으로 넘기려고 하는 주장은 시장원리 가운데 '자기책임 원리', '사적소유권 원리', '자유기업 원리'에 어긋난다. 전문경영인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운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만 반드시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만일 전문경영인의 잘못으로 회사가 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물론 전문경영인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총수를 전문경영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민운동의 주장은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 시장경제에서는 개개인은 누구나 다 '자유기업 원리'를 바탕으로 기업인이 될 수 있고, 성공하면 대기업의 지배주주인 총수가 될 수 있다. 하바드 대학을 1년 마친 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려 1994년 이후 미국 1등 부자 자리를 지켜 오고 있는 빌 게이츠는 이 면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빌 게이츠(1995)). 또 빌 게이츠가 미국 1등 부자 자리를 유지해 올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미국이 '사적소유권 원리'를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주장자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다이아몬드 최근호는 특집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성공하게 된 비결은 '소유자'인 이진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썼다고 한다(동아일보(2002.9.28)).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삼성전자의 성공에는 '자기 책임 원리', '사적소유권 원리', '자유기업 원리'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소액주주운동이 행사하는 힘은 대부분 기존체제의 부패나 기업의 정경유착에서 비롯된다. 정경유착을 보자. 정경유착이란 기업이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에게 돈을 갓다 주고 이득을 얻는 일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철저히 자리를 잡는다면—이를테면, 경제 질서가 철저히 '법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면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에게 돈의 대가를 지불할 방법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법치 원리'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둘째, 소액주주운동가들은 노사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책임 원리', '사적소유권 원리', '자유기업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나고, 이익이 공동으로 분배되면, 이는 '사적소유권 원리'에 어긋나며, 집단 의사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면, 이는 '자유기업 원리'에 어긋난다. 그 뿐만아,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회사의 이윤극대화보다는 집단이익극대화에 목표를 두게 되므로 시장 경쟁원리의 핵심내용인 '경쟁 원리'에 어긋나고, '인센티브 원리'에도 어긋나며, 심지어는 '교환자유 원리'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볼 때,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여덟 가지 시장경제 원리 가운데 정부가 결정해야 할 몫인 '작은 정부 원리'와 '법치 원리'를 제외한 여섯 가지 원리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가 정리해고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교환 자유 원리', '경쟁원리'에 어긋난다. '정리해고'란 '고용보호'의 반대 개념으로 시민운동이 항상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이슈이다. 정리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정리해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환경이 좋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사회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 않다. 전 세계가 글로벌체제로 발전해 가면서 정리해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박동운(1997)). 만일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근로자와 외부근로자, 경력근로자와 신규근로자, 노동과 자본을 유연하게 대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인센티브를 갖지 못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정리해고 반대입장은 '인센티브 원리', '경쟁 원리', '교환자유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시민운동이 사외이사 확대를 추구하고, 사외이사 선임권이 지배주주의 손에서 떠나기를 바란다는 주장은 '자유기업 원리',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

다섯째, 시민단체가 기업가에게 사회적 책임 등 이윤극대화 이외의 것을 요구한다는 주장은 시장경제원리에 크게 어긋난다.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윤극대화가이어야 한다. 이윤극대화를 실현하지 않으려 하거나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무대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실현한 후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체제가 미국 역사를 통해 거의 일관해 왔다. 이 체제야말로 헨리 포드 가(家)나, 토마스 알바 에디슨 가나, 존 디 록펠러 가나, 제임스 캐쉬 페니 가로 하여금 과거 2백 년에 걸쳐 미국사회가 발전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준 체제이다. 이야말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 야심만만한 발명가와 산업의 선구자들이 착수한 위험천만한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출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준 체제이다. ……”

이 체제가 만들어낸 경제적 번영은 전적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그것을 광범하게 유통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결과 증대된 사회 전체의 부와 향상된 일반대중의 복지는 기술혁신자들의 축적한 부의 수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헨리 포드는 큰 재산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국가는 저렴하고 믿을 만한 교통수단과 대량 생산기술을 얻었다. 더구나 대개의 경우에 개인 재산은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납되었다. 록펠러 재단이나 포드 재단이나 카네기재단은 수많은 민간 자선단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몇몇 예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은 '기회의 평등'과 '자유'의 의미를 살려서 운영된 경제체제의 훌륭한 소산이다(박동운(2001)).”²⁾

이렇게 볼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교환자유 원리', '자기책임 원리', '인센티브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시민단체가 진정한 은행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

IMF 이후 한국은 은행구조조정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에서 볼 때 그 이유는 명확해진다. 만일 은행이 주인이 있어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윤극대화를 시도했다면 은행구조조정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은행이 주인이 있어서 이윤극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은행은 금리를 시장금리대로 받았을 것이고, 부도가 날 경우 채권추심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법정

2) 인용은 본래 M. & R. Friedman, Free to Choose, Harcourt Brace Janovich, 1979, 5장을 구어체로 요약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시 문어체로 바꿔 쓴 것이다.

관리를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높은 부채율이나 분식회계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은행 민영화 반대 주장은 '자기책임 원리', '경쟁 원리', '사적소유권 원리'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IV. 결 론

세계는 이미 글로벌경제체제에 들어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란 어떤 상태일까? 레스터 더로우 교수는 글로벌경제체제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센터 5군데를 들면 첫 번째는 뉴욕, 두 번째는 동경, 세 번째는 런던, 네 번째는 프랑크푸르트이며, 다섯 번째는 그랜드 케이만 군도이다. 그런데 불과 3만 명이 거주하는 그랜드 케이만 군도로 왜 돈이 몰리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을 비롯해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경제의 일면이다. 앞으로 글로벌경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L. Thurow(1999)).”

인용 내용은 글로벌경제체제에서는 정부간섭이 적을수록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경제에서는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하나는 기업활동을 심하게 규제해 온 '국가'라는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활동을 새롭게 규제하려는 '시민단체'라는 정부이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한국기업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기가 쉽지 않다. II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한국은 기업규제가 중국보다 심하고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최근에 들어와 시민운동마저 기업활동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해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시민단체는 글로벌경제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라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논리이지만 정부간섭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시장실패'에 국한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바라직스럽다.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하여 자유기업원 박종찬 NGO 실장은 이렇게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운동과 시장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즉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오염의 문제는 시장적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시민운동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율적인 토론과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시장의 작동 결과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과도할 경우 사회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은 시장의 작동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자선활동을 포함해서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시장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율적 해결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박종찬(2002)).”

필자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자 한다. 그것은 시민단체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제정을 주장하여 한국을 '법의 지배'를 받는 시장경제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금은 국민, 정부, 시민단체가 한데 뭉쳐 '세계 일류 기업 하나면 나라 전체가 일등'이라는 '노키아의 나라' 핀란드가 주는 교훈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공병호(1995),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연구원.
- 김정호(2002), 「시민단체, 시장원리, 그리고 소액주주운동의 한계」(자유기업원의 인터넷 NGO 칼럼).
- 민경국(1999), 『하이테크 이야기』, 자유기업원.
- 박동운(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원.
- _____ (2000), 『構造改革과 失業對策—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집문당.
- _____ (2001),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 FKI미디어.
- 박종찬(2002), 「한국의 미래를 위한 시민운동의 모색—참여연대를 비판하면서」(자유기업원의 인터넷 NGO 칼럼).
- 송병락(2001), 『글로벌·지식·경제시대의 경제학』, 법문사.
- 정진호(2002), 「세계 일류기업 하나면 나라 전체가 일등」, *I Love Co.*: vol. 02, pp. 40-42.

시민운동과 시장원리

- Friedman, M. & R.(1979), *Free to Choose*, Harcourt Brace Janovich.
Gates III, William H.(1995), *The Road Ahead*, Microsoft Press.
Thurow, L.(1999), "The Brainpowe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Rudy Ruggles & Dan Holthouse, *The Knowledge Advantage*.
The Fraser Institute(2002),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2
Annual Report*.
IMD(2002), *IMD World Competitiveness Book*.

〈부표〉 한국의 경제자유 평점과 순위: 1970~2000년

(단위: 평점은 10점 만점)

연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종합평점 → ↓ 항목 (종합순위/평가국가 수)	5.9 (31/54)	5.3 (41/72)	5.7 (37/105)	5.8 (38/111)	6.1 (38/113)	6.4 (43/123)	7.0 (38/123)
1. 정부크기: 지출, 조세, 공기업	8.1	6.6	6.0	6.5	6.6	6.8(25위)	7.1(25위)
A: 정부소비	8.5(11.2)	7.8(13.5)	7.3(15.2)	7.4(14.7)	7.1(15.9)	7.0(16.2)	7.3(15.1)
B: 이전지출과 보조금	9.9 (1.0)	9.6 (2.0)	9.6 (2.0)	9.5 (2.2)	9.3 (2.9)	9.3 (2.9)	9.1 (3.7)
C: 공기업과 투자	6.0(25.3)	7.0(21.1)	7.0(22.6)	7.0(25.4)	7.0(19.2)	6.0(25.5)	7.0(20.5)
D: 최고 한계세율		2.0 (63)	0.0 (89)	2.0 (65)	3.0 (60)	5.0 (48)	5.0 (44)
2. 법구조와 재산권 보호	5.8	4.9	6.5	4.2	5.4	5.3(76위)	6.0(60위)
A: 사법부 독립						4.9	4.7
B: 공정한 재판						5.3	5.2
C: 지적재산권 보호						4.3	5.0
D: 군개입							8.3
E: 법제도의 완전성						7.0	6.7
3. 화폐의 건전성	5.0	4.4	5.0	6.4	6.5	7.7(43위)	9.5(18위)
A: 통화증가	4.4(28.1)	5.7(21.6)	6.2(18.8)	8.6 (7.1)	8.6 (7.0)	7.8(10.8)	9.6(-2.2)
B: 인플레이션 변동	9.3 (1.8)	7.3 (6.8)	8.8 (3.0)	8.0 (4.9)	9.2 (1.9)	9.3 (1.9)	8.9 (2.7)
C: 최근 연평균 인플레이션	6.2(19.1)	4.8(26.0)	5.0(24.9)	9.1 (4.6)	8.0 (9.9)	8.9 (5.6)	9.5 (2.3)
D: 외화 소유의 자유	0.0	0.0	0.0	0.0	0.0	5.0	10.0
4. 외국인과의 교환의 자유	4.7	6.2	5.8	6.1	7.2	7.0(37위)	7.0(58위)
A: 국제무역에 대한 조세	8.3	7.9	6.6	6.5	7.5	7.9	8.2
(i) 수출입에 대한 조세 비율	8.3 (2.5)	7.9 (3.1)	7.3 (4.1)	7.6 (3.6)	7.7 (3.4)	8.7 (2.0)	8.8 (1.8)
(ii) 평균 관세율			5.9(20.4)	5.4(23.0)	7.3(13.3)	7.7(11.5)	8.3 (8.7)
(iii) 관세율 변동					7.3 (6.7)	7.4 (6.6)	7.6 (5.9)
B: 규제적 무역장벽						6.0	6.8
(i) 보이지 않는 수입장벽						6.0	5.2
(ii) 수입 비용							8.5
C: 무역부문의 크기	4.6	7.4	8.6	8.2	6.3	6.2	6.4
D: 경쟁환율과 암시장환율 차이	6.0	9.6	7.8	7.8	9.8	10.0	10.0
E: 자본시장 규제	0.0	0.0	0.0	2.0	5.0	4.8	3.6
(i) 외국자본에 대한 접근						4.7	7.2
(ii) 외국인과의 자본거래 규제	0.0	0.0	0.0	2.0	5.0	5.0	0.0
5. 신용·노동·기업 규제		4.6	5.1	5.7	5.0	5.0(84위)	5.4(84위)
A: 신용시장 규제	10.0	5.6	6.1	8.1	8.2	7.4	6.9(64위)
(i) 은행 사적소유		5.0	5.0	5.0	5.0	5.0	5.0
(ii) 외국은행과의 경쟁						4.9	3.2
(iii) 민간부문의 신용확대	10.0	9.7	9.4	9.3	9.5	9.7	9.5
(iv) 부(負)의 실질이자율 회피		2.0	4.0	10.0	10.0	10.0	10.0
(v) 이자율 규제						4.6	4.5
B: 노동시장 규제					3.6	4.4	4.2(58위)
(i) 최저임금의 영향						5.8	4.1
(ii)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3.5	3.5	4.7
(iii) 단체협약			7.2	7.2	7.2	7.2	6.2
(iv) 실업수당의 인센티브						5.5	6.0
(v) 징집제도	0.0	0.0	0.0	0.0	0.0	0.0	0.0
C: 기업 규제						3.1	5.2(63위)
(i) 가격통제					0.0	0.0	1.0
(ii) 신규기업 관련 행정적 애로						5.4	6.5
(iii) 정부관료와 보내는 시간						3.7	7.7
(iv) 신규기업 출발의 용이함						3.3	5.4
(v) 정부관료에게 상납						3.3	5.4

주: (종합순위/평가국가 수)와 ()안의 수치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관련된 항목의 평점으로 최고 10점, 최하 0점이고, 순위를 제외한 ()안의 수치는 관련된 항목의 실제 자료이며, 1995년과 2000년의 경우 ()안의 순위는 필자가 참고 목적으로 넣은 것임.

자료: J. Gwartney and R.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0: Annual Report*, The Fraser Institute, 2002, p. 162.